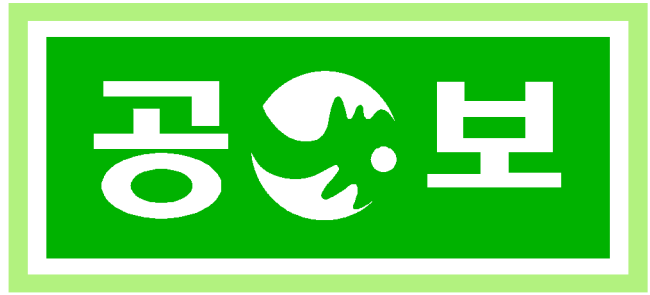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31 호 2015. 2. 16. (월)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8호[도로명주소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58호[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63호[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67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2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산업6길 15-1(매곡동)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사용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5-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영6길 15-1(매곡동)	2015-02-16	기존매곡산영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3-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영5길 33(매곡동)	2015-02-16	기존매곡산영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6-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영6길 20(매곡동)	2015-02-16	기존매곡산영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6-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3길 22(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7-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3길 25(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6-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3길 26(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2-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3길 53(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4-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2길 56(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2-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2길 68(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1-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영1길 18(중산동)	2015-02-16	중산산영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1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11-10,800-33, 710-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분길 29(매곡동)	2015-02-16	기존자언마을인매곡분동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영촌지구 28 6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656(진장동)	2015-02-16	중심구역을결하여동지발전을기하는대표적인도로이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1-03-22	
1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5-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영6길 15(매곡동)	2015-02-16	기존매곡산영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14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294-3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길 111(진곡동)	2015-02-16	기존자언마을인진곡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영촌지구 338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20길 7-5(진장동)	2015-02-16	옛자언마을현제도로사용하는이름으로물산시민이민부구나신숙원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16	울산광역시 북구 신정동 520-6	울산광역시 북구 신정로 16-1(신정동)	2015-02-16	기존자언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8	
1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45-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32-11(화봉동)	2015-02-16	자언부락명칭을사용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10-04-27	
1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영촌지구 928 7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5길 27(진장동)	2015-02-16	옛자언마을현제도로사용하는명촌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1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5-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영6길 7(매곡동)	2015-02-16	기존매곡산영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158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5.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제4조)
 -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
-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제8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 제10조)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관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마. 도시재생지원사업 지원(안 제11조~제13조)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

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3. 근거법규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행정과, 전화 241-7926, 팩스241-790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

의8 및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5-163호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1. 개정취지

-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와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67조·제68조·제69조·제75조·제91조의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조문의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개정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워쓰기 등 개정사항 반영

- 조문의 의료급여법 을 「의료급여법」 으로 개정
- 조문의 지방재정법 을 「지방재정법」 으로 개정
- 조문의 울산광역시복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으로 개정
- 조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 를 수급권자 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복지지원과
(☎ 052-241-7623, fax 052-241-760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u>의료급여법의</u>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제2조(세입과 세출) ----- ----- 「의료급여법」 ----- -----수급권자 ----- ----- -----.</p>
<p>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p>	<p>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p>
<p>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 재무관, ----- ----- -----.</p>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언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5- 167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나. 제5조(예산의 이월) 삭제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제68조 및 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21,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복지경제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미화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익금출납원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수관: 복지경제국장 2. 분임징수관: 환경미화과장 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총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익금출납원: <u>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u> 	<p>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u>재무관</u>----- 4. <u>분임재무관</u>----- 5. -----<u>재무업무담당주사</u> 6. -----<u>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u>
<p>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p>	<p><삭 제></p>